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419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3.

발 의 자 : 박성훈・서일준・송언석
김은혜・김 건・김성원
조은희・김정재・임이자
박수영・이종욱・조지연
이양수・김장겸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,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,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고독사 사후 수습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망자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의 위생적 회복과 오염폐기물·유품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후 수습 지원의 대상,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6조의2(고독사 사후 수습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망자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의 위생적 회복과 오염폐기물·유품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사후 수습 지원의 대상,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